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63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호평 의원 외 13명
- 나. 발 의 일 : 2020년 8월 12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 라. 상 정 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호평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 ‘청년기업’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3조제4호 신설).
-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하고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은 의무적으로 청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 청년교육체계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청년교육 관련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내에 포함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 ‘청년허브’에 관한 사항을 ‘청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 ‘청년지원기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제3항, 제4항).
- ‘청년지원기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5항).
-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6항).
- ‘청년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20. 8. 26. ~ 2020. 9. 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이 제정(각각 2020. 2. 4., 2020.8.4.) 및 시행(2020. 8. 5.)됨에 따라 동 법령 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반영하고, 서울시 청년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
- 제정된 「청년기본법」 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조).
- **(기본이념)**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 **(정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제4조 및 제5조).
- **(청년의 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 정책연구 등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제16조).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회 보고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청년의 범위(안 제3조제1호)

- 안 제3조는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상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이 조례에서 “<u>청년</u>”의 범위는 「<u>청년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이 조례에서 “<u>청년</u>”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정의가 미진했던 실정이며, 여전히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규정 및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국내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원칙: 15세~29세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2쪽) 인용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3쪽) 재인용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서울	19세~34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세~34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세~34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5세~39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세~39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충남	18세~34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세~39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북	18세~39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광주	19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전남	18세~39세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9세~39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경북	15세~39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울산	15세~34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세~34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세종	15세~3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주	19세~34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	15세~3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서울시의 정책별 청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시 청년 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

정책명	청년의 범위	관련 근거(조례 등)
청년수당	만19세 ~ 만34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청년일자리	*만18세 ~ 만34세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2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 만18세 : 고졸 기준
청년주택	만19세 ~ 만39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청년공간	만19세 ~ 만39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창업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위원	만19세 ~ 39세	계획서
청년미취업자 지원	15세 ~ 29세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정책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등 서울시 청년의 범위에 대한 통일적 운영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기본법」 제정이후에도 청소년의 범위¹⁾와 청년의 범위가 중복되는 점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바, 정책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청년층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청년기업(안 제3조제4호)

- 안 제3조제4호는 청년기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23조의 “청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청년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청년기업”이란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u>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u>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

- 청년기업의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없고,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는 청년이 창업자인 ‘청년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나, 청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실효적인 지원 방법 없이 모든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미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4조제4항의 재정적 지원이 포괄적 보조금 지원근거로 사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차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7., 2017. 7. 13., 2019. 12. 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안 제9조)

- 안 제9조는 현행 “청년정책위원회” 를 「청년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청년기본법 시행령」 에 위촉위원의 1/2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동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한다. 1. ~ 4. (생략)</p> <p>③. ~ 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5인</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 1.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2분의 1</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p>	<p>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시·도지사 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p>	<p>제20조(청년위촉대상위원회의범위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위원회의범위 및 청년위촉비율은 다음 각 호의구분과 같다.</p> <p>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p> <p>2. <u>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u></p>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u>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u>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u>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청년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4명을 포함한 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위촉직 위원(15명) 중 청년위원은 9명으로, 1/2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년정책위원회 현황〉

연번	구분	위원명	주요경력	청년여부
1	당연직	서정협	• (현) 서울특별시시장 권한 대행	-
2	당연직	신종우(1968)	• (현) 경제일자리기획관	-
3	당연직	유연식(1969)	• (현) 문화본부장	-
4	당연직	김성보(1968)	• (현) 주택건축본부장	-
5	위촉직	서윤기(1970)	• (현) 서울특별시의원	X
6	위촉직	한기영(1979)	• (현) 서울특별시의원	X
7	위촉직	강동길(1964)	• (현) 서울특별시의원	X
8	위촉직	최은영(1970)	• (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행정사무관	X
9	위촉직	김희성(1989)	• (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시장	O

연번	구분	위원명	주요경력	청년여부
10	위촉직	홍서윤(1987)	• (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 (전) 한국방송공사 앵커	○
11	위촉직	이상엽(1980)	• (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시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	×
12	위촉직	최지희(1991)	• (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우세 강화 시민행동 공동대표	○
13	위촉직	한지혜(1984)	• (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센터장 -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
14	위촉직	이 한(1991)	• (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표 - (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	○
15	위촉직	장재열(1985)	• (현)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대표 - (전) 청년자치정부 공동추진위원장	○
16	위촉직	이동현(1981)	• (현) 호성감정평가법인 이사 -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	×
17	위촉직	유민아(1993)	• (현) 비이(BE) 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대변인	○
18	위촉직	김현수(1993)	• (현) (사)청년과미래 사무총장 - (전) 미디어라인 편집장	○
19	위촉직	김애란(1990)	• (현) 힐데와소피 대표 - (전) 공감씨즈(통일교육 사업개발)	○

4) 청년의 참여 확대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2015년 처음 도입한 “서울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근거로, 2019년까지 사업명을 “서울 청년활동보장”으로 하여 지원금 또한 “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을 함께 사용하였음.
- 2020년부터 동 사업명을 “서울 청년수당”으로 변경하였고, 활동 지원금이라는 표현 대신 “청년수당”으로 변경한바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조례에서 “활동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청년수당”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구체화하고 대 시민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 자문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청년청에는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위원회, 청년시민회의,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새로 구성하려는 청년참여 자문회의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이나 구성 및 운영계획 없이 포괄적 자문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능력 개발과 교육 지원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제4항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출자·출연한 기관과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 청년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받도록 하고, 민간 사업장에서도 청년교육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 안 제11조제5항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은 청년자율예산제에서 제안된 사업(청년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서울청년시민 정책기획자 양성과정)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p>제11조(청년의 <u>능력 등의 개발</u>)</p> <p>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 신설 ></u></p> <p style="text-align: right;"><u>< 신설 ></u></p>	<p>제11조(청년의 <u>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u>)</p> <p>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u>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u></p> <p>⑤ <u>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안)〉

소 관 부 서	정 책 제 안 명	구 분	계	자율예산	본 예산
계			27,736,997	26,965,497	771,500
타부서 소계			4,631,497	4,631,497	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30 차세대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성평등인권	110,000	110,000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 "여성안심마을"	주 거	500,000	50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 담당관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시설 운영지원	사회안전망	211,497	211,49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청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종합정책	일자리노동	216,000	216,000	
도시교통기획과 보행친화기획과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교육 영상 제작물 제작 및 둘레길 공모전 개최	기 후 환 경	245,000	245,000	
문 화 본 부 과 문 화 정 책 과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지원사업	문 화 예 술	610,000	610,000	
	지역, 사회 연계 주도적 활동 경험을 쌓는 예술 (대학생·청년예술가의학교배움터)	문 화 예 술	1,400,000	1,400,000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탈위계 문화 조성 사업	문 화 예 술	255,000	255,000	
	4차산업혁명시대 예술기술(Art&Tech)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사업	기 획 2	984,000	984,000	
시 민 건 강 국 과 시 식 품 정 책 과	채식하기 편한 서울	기 후 환 경	100,000	100,000	
청년청 소계			23,055,500	22,334,000	721,500
청년청 (운영지원단)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모델 구축	시 민 참 여	50,000		50,000
청년청 (청년사업팀)	청년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 민 참 여	150,000		150,000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사회안전망	1,500,000	1,500,000	
	청년 커뮤니티 협력강화 지원사업	시 민 참 여	301,500		301,500
	청년, 공공일자리'1,000개의 꿈' 추진	기 획 3	18,024,000	18,024,000	
청년청 (청년인재팀)	서울청년시민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기 후 환 경	50,000		50,000
	청년활동 인증 시스템 도입	시 민 참 여	110,000		110,000
청년청 (청년협력팀)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기 후 환 경	610,000	610,000	
청년청 (청년지원팀)	청년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	시 민 참 여	600,000	600,000	
	서울시 청년쿠키즈니스센터 설치·운영(광진)	기 획 1	1,400,000	1,400,000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기 획 1	200,000	200,000	
청년청 (청년공간팀)	청년공간 특화브랜딩 및 활성화 사업	시 민 참 여	110,000		110,000

- 청년정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년청은 서울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육의 근거만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청년 관련 교육”이라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교육을 민간 사업장에서 시행되도록 권장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11조제5항의 서울시에서 직접 청년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6) 청년지원기관 등(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을 청년지원기관으로 하여 각각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지원기관 기능 구분〉

연번	기관명	운영방식	2020년 주요사업	일부개정조례안 상 기능
1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민간위탁 (서울시)	1.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 정책 및 활동연구 2.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생산활동 투자 - 청년활동지원 (커뮤니티/직업실험/프로젝트) - 청년공간지원 (운영/입주및활성화/자립실험) 3.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한 청년자산 마련 - 국내교류 -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 홍보 및 아카이빙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서울시)	1. 청년수당참여 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 사회진입 청년의 정책사업 동기화를 위한 기본교육 실시 - 사회진입 청년의 자기주도적 진로모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진입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마음건강 지원사업 - 문턱낮은 청년마음건강 서비스 지원 - 청년자율예산제 심리상담서비스 운영지원 3. 서울청년센터(Youth Center) 운영지원 4. 정책연구, 홍보, 네트워크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서울청년 센터	민간위탁 (서울시 또는 자치구)	1.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 2. 청년정책 및 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정보 집적 및 제공' 3.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4. 지역 관여별 청년 특성에 맞는 '지역 자율사업' 실행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서울청년센터 현황〉

'20년 서울청년센터 현황(2020.8월 기준), 9개소 운영, 3개소 조성

No	지역	위 치(규모)	형식	개소 (예정)
운영(예정)				
1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241-22 302호(329㎡)	민간임대(계약완료)	2월 (완료)
		*기존 자치구 운영공간(신림동 쓰리룸) 활용하여 운영	자치구 민간위탁	

2	은평구	은평구 대조동 9-14 <i>*기존 자치구 운영공간(새싹공간) 활용하여 운영</i>	민간임대(계약완료)	6월
			자치구 민간위탁	(완료)
3	강동구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403㎡)	민간임대(계약완료)	5월
			자치구 민간위탁	(완료)
4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 204 인의빌딩 2층2(347㎡) <i>*설계중, 6월 민간위탁 추진중(현재)</i>	민간임대(계약완료)	6월
			자치구 민간위탁	
5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i>*공사중, 8월 민간위탁 공고 준비중(자치구)</i>	국유지(기부채납)	10월
			자치구 민간위탁	
6	금천구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람리온스밸리 A동 612호(293㎡) <i>*무중력지대 재위탁시 청년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i>	민간임대(계약완료)	2월
			서울시 민간위탁	(완료)
7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591-53외 1필지, 3층(480.71㎡) <i>*공사중</i>	국유지(조성중)	10월
			서울시 민간위탁	
8	노원구	상계동 731-5외 1필지, 12층(297㎡) <i>(예산변경 :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 → 무중력지대 자치구경상보조)</i>	민간임대(계약완료)	8월
			자치구 민간위탁	
9	성동구	성동구 왕십리로 350(도선동 292), 3-4층 <i>(예산변경 :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 → 무중력지대 자치구경상보조)</i>	민간임대(계약완료)	7월
			자치구 민간위탁	
조성(예정)				
10	성북구	대상지 물색 중	매입하여 리모델링	'21.1
			자치구 민간위탁	
11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369-8번지(345㎡) <i>*5층건물 신축중(3개층 활용예정)</i>	신축(조성중)	'21.9
			자치구 민간위탁	
12	서초구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734-101호 상가) <i>*서울교통공사와 임대계약(예정) 후 리모델링 추진(예정)</i>	임대	'21.1
			서울시 민간위탁	

'21년 서울청년센터 현황 / 4개소 운영

No	지역	위치(규모)	형식	개소(예정)
운영(예정)				
1	성북구	대상지 물색 중	매입 후 리모델링	'21.1
			자치구 민간위탁	
2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369-8번지(345㎡) <i>*5층건물 신축중(3개층 활용예정)</i>	신축(조성중)	'21.9
			자치구 민간위탁	

3	서초구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734-101호 상가) <i>*서울교통공사와 임대계약(예정) 후 리모델링 추진(예정)</i>	임대	'21.1
			서울시 민간위탁	
4	광진구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5 2층,3층 <i>*기존 자치구 운영공간(무중력지대 광진구) 활용하여 운영</i>	민간임대(계약완료)	'21.1
			자치구 민간위탁	

'22년 이후 서울청년센터 현황

구 분	'21년 완공(4개소) *'22년 운영예정	'22년 완공(6개소) *'22~'23년 운영예정
설치지역(예정)	강서·강동(역세권 청년주택)+2개소	용산·송파·연희·중산(역세권 청년주택)+2

※ 강서, '21년 11월~12월 준공 예정 / 강동, 준공일정 미정

- 안 제20조제2항의 청년허브의 기능을 살펴보면,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는 새로 추가된 기능이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등에 따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바, 서울시가 아닌 민간위탁기관에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또한,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 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등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일자리 정책과’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투자창업과’의 업무가 일정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는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로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부분이 신설되었으나,
 -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지나치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사업은 아닌지 여부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직영 또는 민간위탁)를 평가”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조례상의 청년지원기관에는 청년활동공간이자 청년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공간 무증력지대”는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조례의 통합·조정 및 서울시 청년지원사업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청년수당의 지급 근거 및 청년기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년기업의 정의를 보완함(안 제3조제4호).
- 청년수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863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년수당의 지급 근거 및 청년기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로 하고,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
칙으로 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
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신 설></p>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4. “<u>청년기업</u>”이란 <u>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u></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4. “<u>청년기업</u>”이란 <u>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u></p>

수 있다.

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서울특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한, 필요시 자문회
의 등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
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를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하고, 제5항 중 “5인”을 “2분의 1”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을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중 “청년의 부채경감 등”을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20조 제목 “청년허브의 설치·운영”을 “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고 한다)’를”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로 하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이 조례에서 “<u>청년</u>”의 범위는 「<u>청년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2.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 신 설 ></u></p> <p>4. ~ 5. (생략)</p> <p>제9조(<u>청년정책위원회</u>)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한다.</p> <p>1. ~ 4.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이 조례에서 “<u>청년</u>”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기업</u>”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5. ~ 6. (현행 제4호~제5호와 같음)</p> <p>제9조(<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5인</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⑥. ~ ⑫.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2분의 1</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⑥. ~ ⑫. (생략)</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신설 ></p> <p style="text-align: right;">< 신설 ></p>	<p>< 삭제 ></p> <p>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p>	<p>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 삭제 ></p>

현행	개정안
<p><u>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② (생략)</p> <p>제20조(<u>청년허브</u>의 설치·운영)</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u>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u>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u></p> <p>1. <u>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u></p> <p>2. <u>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20조(<u>청년지원기관</u>의 설치·운영)</p>

현행	개정안
<p>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u>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청년허브</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u> 2. <u>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u> 3. <u>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u> 4. <u>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u> 5. <u>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u> 6. <u>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u> 7. <u>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u> 8. <u>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u>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u> 2. <u>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u> 3. <u>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u> 4. <u>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u> 5. <u>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현행	개정안
<p data-bbox="598 331 794 376">< 신설 ></p> <p data-bbox="598 1093 794 1137">< 신설 ></p> <p data-bbox="210 1796 794 1966">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p>	<p data-bbox="858 331 1444 501">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data-bbox="858 524 1444 1070"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data-bbox="858 1093 1444 1205">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data-bbox="858 1227 1444 1774"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 data-bbox="858 1796 1444 1966">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p>

현행	개정안
<p><u>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있다.</u></p> <p><u>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863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년수당의 지급 근거 및 청년기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로 하고,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
칙으로 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
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신 설></p>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4. “<u>청년기업</u>”이란 <u>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u></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4. “<u>청년기업</u>”이란 <u>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u></p>

수 있다.

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서울특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한, 필요시 자문회
의 등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
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를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하고, 제5항 중 “5인”을 “2분의 1”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을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중 “청년의 부채경감 등”을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20조 제목 “청년허브의 설치·운영”을 “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고 한다)’를”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로 하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이 조례에서 “<u>청년</u>”의 범위는 「<u>청년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2.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 신 설 ></u></p> <p>4. ~ 5. (생략)</p> <p>제9조(<u>청년정책위원회</u>)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한다.</p> <p>1. ~ 4.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이 조례에서 “<u>청년</u>”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기업</u>”이란 대표자가 <u>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5. ~ 6. (현행 제4호~제5호와 같음)</p> <p>제9조(<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5인</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⑥. ~ ⑫.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2분의 1</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⑥. ~ ⑫. (생략)</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신설 ></p> <p style="text-align: right;">< 신설 ></p>	<p>< 삭제 ></p> <p>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p>	<p>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 삭제 ></p>

현행	개정안
<p><u>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② (생략)</p> <p>제20조(<u>청년허브</u>의 설치·운영)</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u>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u>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u> 2. <u>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u>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20조(<u>청년지원기관</u>의 설치·운영)</p>

현행	개정안
<p>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u>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청년허브</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u> 2. <u>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u> 3. <u>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u> 4. <u>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u> 5. <u>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u> 6. <u>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u> 7. <u>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u> 8. <u>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u>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u> 2. <u>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u> 3. <u>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u> 4. <u>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u> 5. <u>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현행	개정안
<p data-bbox="598 331 794 376">< 신설 ></p> <p data-bbox="598 1093 794 1137">< 신설 ></p> <p data-bbox="209 1794 794 1966">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p>	<p data-bbox="858 331 1444 504">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data-bbox="858 521 1444 1070"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data-bbox="858 1093 1444 1205">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data-bbox="858 1223 1444 1771"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 data-bbox="858 1794 1444 1966">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p>

현행	개정안
<p><u>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있다.</u></p> <p><u>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